

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(그린하이브리드) 개정(안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(안) | 비 고 |
|---|--|---|
| <p>제3조(카드의 발급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, 반환금액 산정방식,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<u>알려야</u> 합니다</p> | <p>제3조(카드의 발급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, 반환금액 산정방식,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<u>알리고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</u></p> | <p>- 금소법 제정에 따른 문구 정비 (법 제23조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 의무)</p> |
| <p>제4조(유효기한 및 재발급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,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,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, 전화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메시지(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(SMS 등)로 대체전송됩니다. 이하 같습니다.), 팩스(FAX),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·거절예정사실을 <u>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, 갱신</u></p> | <p>제4조(유효기한 및 재발급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,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,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, 전화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메시지(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(SMS 등)로 대체전송됩니다. 이하 같습니다.), 팩스(FAX),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·거절예정사실<u>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</u> 새로운 유효</p> | <p>- 여전법 시행령 (제6조의6 제2호)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</p> |

| 현행 | 개정(안) | 비고 |
|--|--|---|
| <p>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 | <p>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,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.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| |
| <p>제5조(카드의 관리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</p> | <p>제5조(카드의 관리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 다만,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 | <p>- 공정위 변경 명령에 따른 개정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만 부담(토록 단서 추가)</p> |
| <p>제11조(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(단,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</p> <p>1.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·도산·경영위기, 천재지변, 금융환경의 급변,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</p> <p>2.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. 다만,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</p> <p>3.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</p> | <p>제11조(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(단,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</p> <p>1. <u>카드사 또는 제휴업체의 휴업·파산·경영상의 위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</u></p> <p>2. <u>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,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</u></p> <p>3. <u>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</u></p> | <p>- 금소법 제정(시행령 제15조)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관련 문구 정비</p> |

| 현행 | 개정 (안) | 비고 |
|---|--|--|
| <p>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,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, 변경 내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<u>카드사의 홈페이지, 이용대금명세서, 우편서신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</u> 고지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<u>이용대금명세서, 우편서신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</u>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.</p> <p>1. 제4항제1호, 제2호 : 사유발생 즉시</p> <p>2. 제4항제3호 :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</p> <p>⑦ ~ ⑫ (생략)</p> | <p><u>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, 변경 내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<u>서면,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, 전화,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,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</u>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<u>서면,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, 전화,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,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</u>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.</p> <p>1. 제4항제1호, 제2호 : 사유발생 즉시</p> <p>2. 제4항제3호 :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</p> <p>⑦ ~ ⑫ (현행과 같음)</p> | <p>- 금소법 제정 (시행령 제15조)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통지 방법 문구 정비</p> |
| <p>제14조(이용계약의 성립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이용계약 성립 이후 카드사는 이자율, 대출기간,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</p> | <p>제14조(이용계약의 성립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이용계약 성립 이후 카드사는 이자율, 대출기간,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</p> | |

| 현 행 | 개 정 (안) | 비 고 |
|---|---|---|
| <p>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 또는 대출계약서를 전자우편(E-MAIL), 서면, 이용대금명세서 등 회원과 협의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.</p> | <p>내용이 포함된 <u>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</u></p> | <p>- 금소법 제정에 따른 문구 정비 (법 제23조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 의무)</p> |
| <p>제20조(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계약 철회) ① 회원은 <u>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(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실행일)로부터 14일(이하 “철회기한” 이라 합니다)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통신으로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</u> ② ~ ⑤ (생략)</p> <p>⑥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에 대해 회원에게 설명하고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</p> | <p>제20조(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계약 철회) ① 회원은 <u>제34조에 따라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u> ② ~ ⑤ (삭제) ② (현행과 같음)</p> | <p>- 제34조에 계약 철회 관련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문구 수정</p> <p>- 제34조에 관련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삭제</p> <p>- 항 번호 올림</p> |
| <p>(신설)</p> | <p>제34조(청약의 철회) <u>회원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| <p>- 금소법 제정 (법 제46조)에 따른 청약의 철회 조항 신설</p> |
| <p>(신설)</p> | <p>제35조(위법계약의 해지) <u>회원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| <p>- 금소법 제정 (법 제47조)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 신설</p> |

| 현 행 | 개 정 (안) | 비 고 |
|--|--|---|
| 제34조(변경승인 등) ① ~ ⑤ (생 략) | 제36조(변경승인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| - 조 번호 내림 |
| 제35조(경과 조치) ① ~ ③ (생 략) ④ 제34조제5항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 합니다. ⑤ ~ ⑨ (생 략) ⑩ 제20조제6항은 2021년 1월 29 일부터 적용합니다. | 제37조(경과 조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36조제5항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 합니다. ⑤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재20조제2항은 2021년 1월 29 일부터 적용합니다. | - 조 번호 내림 - 문구(조 번호) 수정 - 문구(항 번호) 수정 |
| 제36조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 (생 략) | 제38조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 (현행과 같음) | - 조 번호 내림 |
| 제37조(관할법원) (생 략) | 제39조(관할법원) (현행과 같음) | - 조 번호 내림 |